공 개

의안번호	제 18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1. 14. (제 1 차)

의결사항

신한투자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1. 14.

1. 의결주문

신한투자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신한투자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가.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

○ 신한투자증권㈜ : 과태료 20백만원 부과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(붙임 1)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(붙임 2)

라. 관계부서 협의

○ 2025년도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(2025.12.4.) 심의필

○ 2026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(2026.1.7.) 심의필

○ 2026년도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6.1.8.) 심의필

<별지>

신한투자증권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과태료 20백만원 부과

- 조치사유 :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
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8호, 제449조(과태료) 제1항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9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등

2. 조치사유

가.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

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·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○ 신한투자증권㈜의 집합투자재산 매매업무 담당자는 20xx.x.xx. '♣♣♣♣♣♣ ♣♣♣♣ ♣♣♣♣ ♣♣♣♣♣ ♣♣♣♣♣♣♣♣♣ ♣♣♣ ♣♣' 등 x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·처분(x건, x,xxx억원)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

○ 20xx.xx.xx.~xx.xx. 기간 중에는 '♤♤♤♤♤♤ ♤♤♤♤ ♤♤♤♤ ♤♤♤♤ ♤♤♤♤♤♤♤♤ ♤♤' 등 x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·처분(xx건, x,xxx억원)한 사실이 있음

(붙임 1)

관계 법규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제80조(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)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·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, 취득·처분 등의 결과,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④ 법 제85조 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9.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10조(자산배분방법 등)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·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·처분 등을 하는 경우
2.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□ 금융투자업규정

제4-55조(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) 규칙 제10조 제4항 제2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
2.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
3.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

제4-64조(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) 영 제87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,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4-5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·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

(붙임 2)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신한투자증권㈜

2. 제재조치일 : 2026. 1. 1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○ 과태료 20백만원 부과
직원	○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

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·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○ 신한투자증권㈜의 집합투자재산 매매업무 담당자는 20xx.x.xx. ♣♣♣♣♣♣ ♣♣♣♣ ♣♣♣♣♣ ♣♣♣♣♣ ♣♣♣♣♣♣♣♣♣♣♣♣ ♣♣'' 등 x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·처분(x건, x,xxx억원)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,

○ 20xx.xx.xx.~xx.xx. 기간 중에는 ♤♤♤♤♤♤ ♤♤♤♤ ♤♤♤♤ ♤♤♤♤ ♤♤♤♤ ♤♤♤♤ ♤♤'' 등 x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·처분(xx건, x,xxx억원)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,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등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금융투자검사2국
연 락 처	02-2100-2653	02-3145-7641